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대 한 상 사 중 재 원

[www.kcab.or.kr]

상거래 분쟁해결제도 개관

분쟁발생의 필연성

○ 개인의 사회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필연적 분쟁 발생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 당사자간 해결 불능 시 국가공권력에 의한 해결

○ 엄격한 절차

↓

- 분쟁유형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법률외적 지식의 필요성 대두
- 분쟁의 실체적 진실판단 요구

ADR에 의한 분쟁해결

○ 민간 주도형 해결방식

○ 민주적인 절차진행

상거래 분쟁해결제도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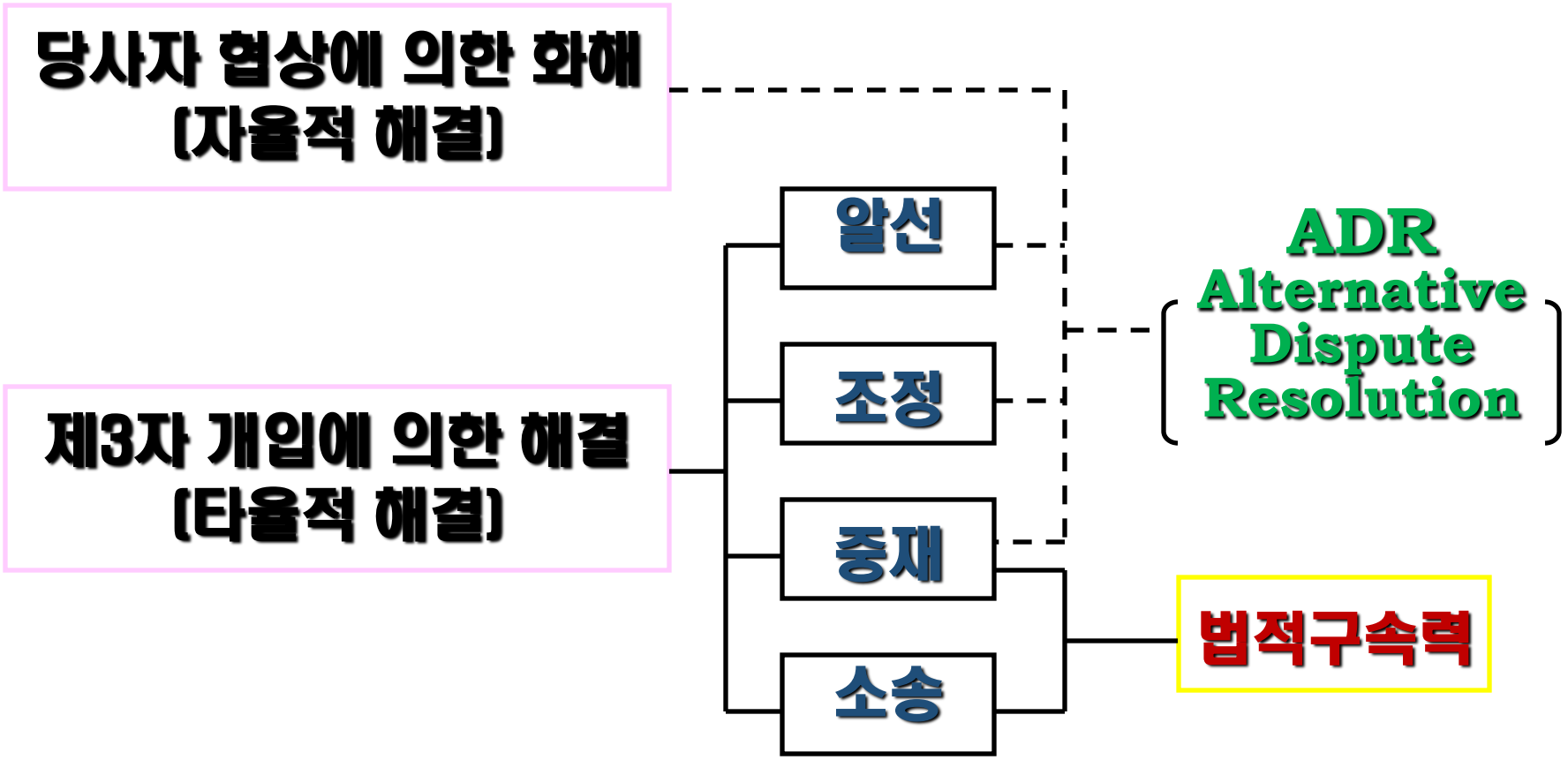

상거래 분쟁해결제도 개관

알선사건 현황

- 대한상사중재원 알선제도는 무료로 서비스 제공

- 우리 중재원은 1967년부터 2014년까지 총 19,857건의 알선신청이 접수되었으며, 2014년에는 916건이 접수되었음

- 합의성취율: **2014**년 접수된 알선사건 중 **66%**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음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규칙: **2012. 7. 1**자 발효

알선사건 접수현황(2012-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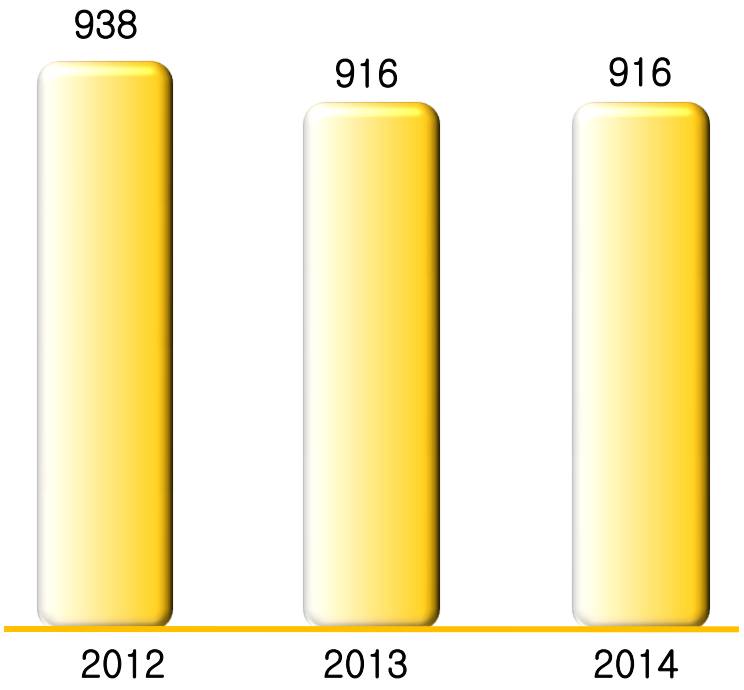

중재합의 개관

1) 중재합의

중재합의란? →

-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중재법 제3조)

2)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합의

사전합의

- 장래분쟁 (중재조항)

사후합의

- 현존분쟁 (별도합의)

중재합의 개관

3) 중재합의의 서면성

서면에 의한 합의만 인정(중재법 제8조)

-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일방당사자가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

중재합의 개관

4) 중재합의의 요소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중재합의는 유효하다.
(대법89년 판결)

중재지

- 중재판정의 국적이 결정되는 기준
- 국제중재의 경우, 중재지는 적용되는 중재법, 관할법원, 판정종류, 집행준거법, 중재언어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재기관

- 중재절차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상설기관으로 중재절차를 규정한 중재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중재인단을 유지관리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

중재합의 개관

4) 중재합의의 요소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중재합의는 유효하다.
(대법89년 판결)

준거법

- 당사자들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률

  실체준거법: 분쟁의 실체(대상)에 적용되는 법(중재법 제29조)

  절차준거법: 분쟁의 해결절차에 적용하는 법(중재법 제20조)

중재언어

-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

✓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언어는 한국어가 되며, 당사자의 요구나 외국인 중재인이 있는 경우, 영어를 공용하며 판정문의 해석상 차이는 한국어에 의함

중재합의 개관

5) 중재합의의 효력

직소금지의 효력 (중재법 제9조)

- 방소항변시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그 소를 각하

최종해결 (중재법 제35조)

- 중재판정의 법적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중재합의 개관

5) 중재합의의 효력

국제적 해결 (뉴욕협약)

- 1958. 6. 10.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뉴욕에서 채택)
- 중재에 관한 각국 실정법간의 법 충돌 해소로 강제집행보장
- 2015. 5. 30. 현재 155개국 가입
- 우리나라 1973. 5. 9.가입(상사중재, 상호주의 유보선언)

중재합의의 실례

1.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

◆ **국내거래**

“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 **국제거래**

“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합의의 실례

3. 잘못된 중재조항 사례

◆ 중재를 존재하지 않는 기관에서 중재하기로 약정한 경우

1.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under the rules and procedures then in for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ribunal. The location of such arbitration shall either be Seoul, Korea or San Diego, California."*

2. Korea Arbitration Institute에 의한 중재

3. Germany International Economic Trade Arbitration Commission에 의한 중재

중재합의의 실례

3. 잘못된 중재조항 사례

◆ 중재를 수행하기 어렵게 절차를 규정한 경우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at the KCAB under* ***the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the ICC*** *[…]"*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외국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X)

중재합의의 실례

2. 분쟁의 소지가 높은 중재조항 사례 [‘선택적 중재조항’]

◆ 분쟁의 해결방식으로 중재와 다른 방법을 선택적으로 규정

◆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1. 중재 2. 조정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해결

◆ □□□조정기관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 중재

중재합의의 실례

3. 분쟁의 소지가 높은 중재조항 사례

◆ 소액거래분쟁을 고액 경비 발생하는 외국중재로 약정한 경우

-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

- (원격지 외국 소재의) 중재기관에서 중재에 의하여

중재합의의 실례

3. 분쟁의 소지가 높은 중재조항 사례

- 뉴욕협약 비체약국 소재 중재기관의 중재를 약정한 경우

  "[...] shall be finally settled in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Chinese Arbitration Association in Taipei."

중재합의의 실례

4. 중재합의와 관련된 국내 주요 판례

◆ **대법원 2005. 5.13.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합의의 성질이나 방식 등을 기초로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 중재합의는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계약 자체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 효력

중재합의의 실례

3. 중재합의와 관련된 국내 주요 판례

◆ 사안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제3기관의 중재를 받는다"라는 중재조항의 유효한가?"

◆ 대법원 2005. 5. 31.선고 2005다74344 판결

-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한, 비록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의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한 중재합의로서의 요건은 충족